

선 람	기관외 장



제19호(호외) 2022. 5. 24.(화)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2-1051호 광양시 시금고 지정 공고	1
광양시 공고 제2022-1057호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 797-2323, 행정2713)

광양시 시금고 지정 공고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에 따라 시금고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광 양 시 장

1. 금고 지정 결과

가. 제1금고: NH농협은행(일반회계, 특별회계 11, 기금 6)

○ 일반회계

○ 특별회계(11):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의료급여기금, 수질개선사업, 주민소득지원기금, 사회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성황도이지구도시개발사업,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국민주택사업

○ 기금(6):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양성평등기금

나. 제2금고: 광주은행(특별회계 7, 기금 1)

○ 특별회계(7):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 광양항동측배후단지개발사업,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와우지구도시개발사업, 광영의암지구도시개발사업, 대근지구도시개발사업

○ 기금(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다. 광양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 제1금고: 1순위 농협은행(총점 880.95점), 2순위 국민은행(총점 862.2점)
- 제2금고: 1순위 광주은행(총점 873.95점), 2순위 국민은행(총점 866.35점)

2. 약정기간: 2023. 1. 1. ~ 2025. 12. 31. (3년)

3. 금고의 취급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처리일계표 제출
-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 및 지방채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지정한 업무

광양시 공고 제2022-1057호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24.

광 양 시 장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2021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대상으로 정신질환(장애)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제10조)·평등권(제11조)의 과도한 침해·제한 해당하여 일부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위치

나.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 공중하강체험시설 이용을 위한 이용시간 및 시설이용료 등에 관한 규정

다.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관리 및 운영의 주체, 지도감독 등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기간 : 2022. 5. 24. ~ 2022. 6. 14.(20일간)

5.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785 / 전남 광양시 행정2길 5 관광과

(전화:061-797-1950, FAX:061-797-4187, 전자우편:wonhc@korea.kr)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관광과 관광시설팀(061-797-19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붙임 2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하강체험시설”이란 관리실, 휴게실, 모노레일, 출발지, 도착지 등 공중하강체험을 위해 설치하여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공중하강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체험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위탁료”란 체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시설운영 및 이용시간) ①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험시설을 운영하며, 매표 및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시설이용료 및 감면)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험시설 이용자로부

터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이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수익 감소 등의 사유로 시설이용료를 인상할 수 없으며, 홍보 등을 위한 수탁자의 자율적인 시설이용료 인하는 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또한,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나 기념일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시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설이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체험시설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시설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을 원하는 이용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납부한 시설이용료를 반환한다.

가. 이용일 5일 전까지: 전액

나. 이용일 4일 전부터 당일까지: 시설이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시장 또는 수탁자의 귀책 사유나 천재지변, 우천으로 체험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2. 유류 등 화재 위험 물질을 소지 한 사람
3. 시설물 파손 및 음주 등의 행위를 한 사람
4.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설물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시설물 이용자는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시설물 관리·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시설물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시설물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이용자가 진다.

④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인솔자 등은 성실한 보호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및 위탁) ① 시장은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험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편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체험시설 수탁

자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수탁자 선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탁기간) ①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료의 징수) ① 시장은 체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탁료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위탁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용자의 사고나 시설의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승인 없이 체험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구조물 안전성 검토 등을 시행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안전사고 방지 및 체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전반에 대해 수시검사와 매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중 실수·부주의·고의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시설이용료에 대한 변동·조정이 필요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동·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이행보증금) 수탁자는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료를 분할 납부하게 되는 경우 위탁료의 100분의 50이하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체험시설의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체험시설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의 지도·감독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파산, 부도 등으로 수탁자가 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탁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12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 할 경우 후속 운영자가 선정될 때까지 운영하여야 하며 후속 운영자에게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u>공중하강체험시설</u> ”이란 관리실, 휴게실, 모노레일, 출발지, 도착지 등 공중하강체험을 위해 설치하여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1. “ <u>체험시설</u> ”이란 -----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시설운영 및 이용시간) ①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u>공중하강체험시설</u> (이하 “ <u>체험시설</u> ”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매표 및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시설운영 및 이용시간) ① ----- --- <u>체험시설</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시설이용료 및 감면) ① (생략)	제4조(시설이용료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수익 감소 등의 사유로 <u>이용료</u> 를 인상할 수 없으며, 홍보 등을 위한 수탁자의 자율적인 <u>이용료</u> 인하는 가능하다.	② ----- --- <u>시설이용료</u> ----- ----- --- <u>시설이용료</u>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이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을 원하는 이용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납부한 시설이용료를 반환한다.

가.·나. (생략)

2. 시장 또는 수탁자의 귀책 사유나 천재지변, 우천으로 체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 (생략)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및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2. ~ 4. (생략)

제5조(시설이용료 반환) ① ----

---- 시설이용료-----

-----.

1. -----
이용 -----

-----.

가.·나. (현행과 같음)

2. -----

-- 이용-----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이용제한) -----

-----.

1. 고소공포증-----

2. ~ 4. (현행과 같음)